

양현재 내규시행세칙

제1조(생활지도) 본 재의 목적에 알맞은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 실천하게 한다.

1. 학업충실
2. 복장 용의 단정
3. 주변 환경 정리(양현재 청소)
4. 양현재 행사 참가

제2조(수업) 매 학기 수업은 양현재 교과목을 기본으로 주당 30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.
(1강좌 당 4시간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.), (단, 대학원생 수업은 시간 배당의 어려움으로 매학기 수요일 18:30으로 시간을 확정한다.)

제3조(평가) 본 재의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는 매 학기마다 한다. 단, 필요에 따라 임시 시험을 행할 수 있다.

제4조(선발 및 퇴재 기준) 재생의 선발 및 퇴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양현재 장학금 전액수혜자 자격을 갖는다.
 - ① 학교 성적 : 전과목 과락없이 평균평점 4.0 이상.
 - ② 양현재 성적 : 전과목 과락없이 평균 90점 이상.
 - ③ 전액수혜자 자격을 갖춘 자가 많은 경우, 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2.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양현재 장학금 반액수혜자 자격을 갖는다.
 - ① 학교 성적 : 전과목 과락없이 평균평점 3.5이상. 단, 학부1학년은 전과목 과락없이 평균평점 3.0 이상.
 - ② 양현재 성적 : 전과목 과락없이 평균 70점 이상.
 - ③ 신입 재생의 선발은 학교 성적 순으로 하되(전과목 과락없이 학교 성적 평균평점 3.5이상) 반액수혜를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가 많을 경우 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3.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저촉될 경우 퇴재 대상이 된다.
 - ① 학교 성적 :
 - ㉠ 한 과목 이상 과락이 있을 경우.
 - ㉡ 평균평점 3.5 미만일 경우. 단, 학부 1학년은 평균평점 3.0미만일 경우
 - ② 양현재 성적 :
 - ㉠ 한 과목 이상 과락이 있을 경우.
 - ㉡ 평균성적 70점 미만일 경우.

제5조(장학) 본 재의 장학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전체 장학금수혜자는 전액기준 33명분을 원칙으로 한다.
2. 장학수혜 대상자는 “양현재 규정” 제2장 재생, 제5조(자격)에 따른다.<수정, 2015. 2. 1.>
3. 장학금수혜자 선발은 지도위원회에서 정하되, 대학원생의 경우 각과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4. 장학금 수혜자가 본 재의 특강을 듣지 않고 재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장학금 회수조치를 할 수 있다.
5. 대학원 : 학부 T.O는 6:4 수준으로 결정한다.<삭제, 2015. 2. 1.>
6. 학부생은 각 학년별로 T.O를 배정하며, 선발인원은 다음과 같다.<삭제, 2015. 2. 1.>
 - ① 1학년 : 전액기준 2.5명
 - ② 2·3·4학년 : 전액기준 각 4명
7. 전액장학금은 1학년을 제외한 2·3·4학년 학생 중, 전액장학금 수혜자격을 갖춘 자에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한다.<삭제, 2015. 2. 1.>
 - ① 각 학년별 양현재 성적 기준 상위 2명씩 모두 6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한 학년에서 전액수혜대상자가 지급기준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타 학년 학생 중 양현재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대체하여 지급한다.
5. 대학원 재생은 학과회의의 결정에 의해 임의로 교체할 수 있다.
6. 대학원 각 학과의 T.O는 재적인원의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.
7. 해외장기연수학생(교환학생)에게 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.
8. 각 학과의 결정에 따라 대학원생에게도 전액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9. 양현재 성적 미달로 퇴재가 된 재생은 해당 과정을 마칠 때까지 재생으로 다시 선발 될 수 없다.
10. 다음 학기에 양현재 장학금을 신청할 학생은 반드시 직전 학기에 양현재 수업을 수강하여야 한다. 이수 학점은 현 양현재생 기준에 따른다.
11. 이전 학기 양현재 재생이 군복무·휴학 기타 사유로 복학할 경우 그 이전 학기의 조건이 양현재생 선발에 적합할 경우 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.

제6조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현행 학교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.

부 칙

이 내규 시행 세칙은 1961년 4월 25일부터 실시한다.

부 칙

이 개정 내규 시행 세칙은 199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내규 시행 세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내규 시행 세칙은 200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내규 시행 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내규 시행 세칙은 2007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내규 시행 세칙은 200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내규 시행 세칙은 201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내규 시행 세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